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77
----------	-------

발의연월일 : 2025. 9. 8.

발 의 자 : 김선교 · 김성원 · 서천호
이헌승 · 박덕흠 · 김위상
김상훈 · 구자근 · 박충권
김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입장권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온라인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운동경기 입장권등의 가격은 다양한 할인 적용 수단이 적용되며 실제 구입 가격은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로 규정하면 부정판매 단속과 제재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제 온라인 암표행위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에 국한되지 않으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보안 조치를 우회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상 부정판매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암표판매의 기준을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 등 그 수단과 관계없이 온라인상에서 암표와 관련된 판매금지를 분명히 하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하는 한편,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장권등의 부정거래를 근절하여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 등).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을 “판매 정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를 “온라인상에서 그 수단과 관계 없이”로 한다.

제4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제49조의2제1호를 삭제한다.

제51조제2항 중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제2호”를 “제47조제1

호, 제48조제1호·제2호 및 제49조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u>자신</u> 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 ----- ----- ----- ----- ----- ----- ----- ----- ----- -----판매 <u>정가를</u> ----- ----- ----- -----.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온라인상에서 그 <u>수단과 관계없이</u> ----- -----.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① (생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① (현행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 2. (생략)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

제49조(벌칙) -----

-----.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2. ·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제49조의2(벌칙) -----

-----.

<삭 제>

2. (생략) 제51조(몰수·추징) ① (생략) ② <u>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제2호</u>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③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51조(몰수·추징)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제2호 및 제49조제1호</u>----- -----. ③ (현행과 같음)
--	---